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운동부 지도자 계약절차 부적정

관계기관 정발고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또는 재계약 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징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채용 또는 재계약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업무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계약은 학교체육소위원회(또는 별도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 직무연수, 범죄경력 조회 등의 확인 등 임용검토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발고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기존에 채용하였던 운동부 지도자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1) 결격사유 및 해당 경기단체 징계사실 조회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2)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별도의 임용검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운동부 지도자 결격사유 및 징계사실 조회, 임용검토 실시 현황

학년도	구분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학교체육 소위원회 임용검토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일	이동학대 전력조회일	경기단체 징계사실 조회일	
2021	체육코치	○○○	2019.03.01. ~ 현재	미실시	미실시	2020.04.24.	미검토
2022				미실시	미실시	2020.04.24.	미검토

【조치할 사항】

- ① 정발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